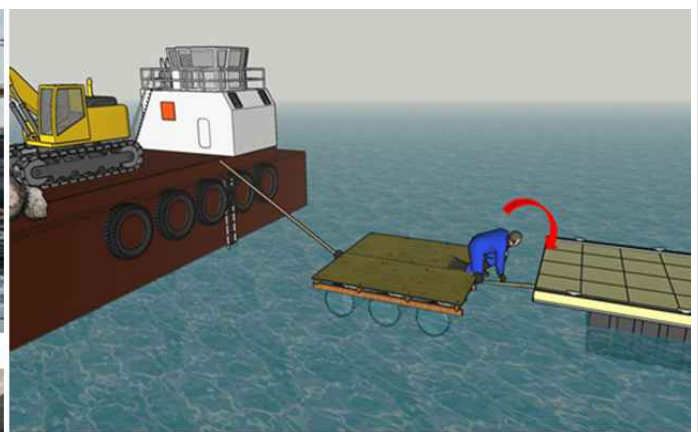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3. 1. 31.(화) 18:30경, 경남 □□군 △△면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피해자가 부잔교¹⁾에서 부선²⁾(일명 바지선³⁾)으로 이동하기 위해 부잔교에서 뗏목⁴⁾에 탑승한 후에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사망한 재해임

- 1) 부잔교 : 조석 고저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와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함을 1개 또는 여러 개 연결하여 부두 기능을 갖도록 한 부체
- 2) 부선 :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
- 3) 바지선(barge) : 항만공사에서 모래, 토석 등 자재나 준설토 운반에 이용하는 부선
- 4) 뗏목 : 부잔교에서 바선 이동용으로 사용



재해 발생 원인

- 육지와 바지선 사이를 통행할 수 있는 통로 미설치
 - 육지에서 바지선으로 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, 피해자가 바지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뗏목에 탑승하던 중 빠짐
- 구명장구(구명조끼, 구명구 등) 미비치
 - 작업을 하는 장소(바지선 상부)에 구명장구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비치



재해 예방 대책

- 육지와 바지선 사이를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의 통로 설치
 - 육지와 작업장소인 바지선 사이를 이동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통로를 설치하고,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
- 구명장구(구명조끼, 구명구 등) 비치 등 필요한 조치 이행
 -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를 비치하고, 작업장소로의 이동 중 물에 빠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동시 구명장구를 착용하고 이동하여야 하며, 착용 상태 등 관리감독 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